

2011. 3.

수 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제180회 제천시
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발의자 : 김호경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인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발의서명서

| 의원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비 고 |
|---------|---|-----|
| 김호경 |  | |
| 7.9. 성준 |  | |
| 전철성 |  | |
| | | |
| | | |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번호 | 1500 |
|------|------|

발의연월일 : 2011. 3. 9.
발 의 자 : 김호경의원외 2인

1. 제안이유

현 조례 중 제4조(전문위원)를 현실에 맞게 일부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4조(전문위원)제1항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 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로 하고,
제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를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하고,
- 제4조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붙임 : 1.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 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②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제3항 중 “제1항 내지 제2항” 을 “제2항”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 비 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p> <p>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p> <p>③전문위원은 <u>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u>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p> | <p>제4조(전문위원)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사무보조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p> <p>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p> <p>③ - - - - <u>제2항</u> - - - - - - - - - - - - - - -</p> |